

부속서 5A
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

1. 다음의 기관 및 그 승계기관은 제5장(통관절차)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승인된다.

가. 대한민국의 경우, 관세청, 대한상공회의소, 그리고 자국의 법률 및/또는 규정,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기관. 그리고

나. 싱가포르의 경우, 싱가포르 세관, 그리고 자국의 법률 및/또는 조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한 기관

2. 승인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함으로써 이 장 및 제4장(원산지규칙)의 요건을 반복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, 수출당사국은 그러한 승인기관이 이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승인을 철회한다. 이 목적을 위하여, 수출당사국은 승인철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국의 관세행정기관의 견해를 고려한다.

3. 수출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승인된 기관의 승인철회, 대체 또는 승인추가를 수입당사국에게 즉시 통지한다.